## 학부모위원선출공고

은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~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은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,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.

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나. 등록 장소 : 은빛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교무실)
  - 다. 기 간 : 2025. 3. 10. 13:00 ~ 3. 12. 16:00 (평일, 업무시간내, 시간엄수)
  -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전 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(구비서류는 교무실 비치 /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)

## 2. 위원선거

- 가. 선거장소 : 은빛초등학교 은빛나래관
  - (직접투표시 학교사정에 의해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나. 선거일시 : 사전투표 2025. 3. 17.(월) 09:00 ~ 3. 19.(수) 09:00
  - 직접투표 2025. 3. 19(수) 14:30~16:00
- 다. 선거방법 : 온라인 사전 투표 및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실시
- 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7명 (유치원 포함 1명)
-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5년 3월 7일

은빛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